

○
**무료 폰트의 이용과 관련한
최신 판례 검토**

연남법률사무소

박지환 변호사



본 리포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서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례의 검토

5. 결론

I. 서

최근까지도 무료 폰트 프로그램(이하 “무료 폰트”)의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무료 폰트를 배포하면서 제시한 약관(라이선스) 내 특정 조건의 해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간 법원에서 무단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거나,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로 5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서는 사용 범위 제한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피고인 사례에서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무료 폰트의 복제 및 사용과 관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최신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관계

아래 두 판례에서 원고가 무료 폰트를 배포하였고 피고가 이를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관계는 공통적이며, 피고들은 각 영리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으로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은 상이하다. 아래 두 판결 모두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C일자 일명 ‘D’서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E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서체는 네이버 Software 자료실(software.naver.com, 이하 ‘네이버 자료실’이라 한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였고, 유아용품 온라인 판매를 하는 ‘OOOOO’라는 인터넷 홈페이지(OOOOOO.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제작하면서 “OOOOO”,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문구를 이 사건 서체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F일경 G가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의 OOOOO 등의 문구가 이 사건 서체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람은 피고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피고를 창원 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 검찰청 검사는 H일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홈페이지와 네이버 자료실에 이 사건 서체를 게시하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기 전 가정 등에서 비영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였다면 공지된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서체를 비영리적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사용허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서체를 영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3,300,000원 [= 기본 설치 라이선스(Basic Installation License) 금액 2,200,000원 + 2차적저작물 라이선스 금액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서체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서체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리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에는 과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의 사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체의 날개 가격 상당액인 88,000원의 범위에서 피고가 단 12자의 글씨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한정해야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E’이라는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함된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권자이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복지원’이라 한다)은 2015년경 ‘F 프로그램 G’ 홍보지(이하



‘이 사건 홍보지’라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인 ‘F 프로그램 G’ 문구 및 그 아래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대상, 문의 및 신청, 프로그램 내용’ 부분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복지원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복지원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복지원 주장의 요지

피고 복지원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이 사건 서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였다. 설령 이 사건 홍보지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원고가 서체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이용자인 피고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행위이다.

3. 법원의 판단

1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1) 법리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임을 분명히 하였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 조 제2항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1024, 1031, 1048 판결).

2) 피고의 사용허락계약 위반 여부 : 법원은 영리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사용허락 계약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자가 저작물인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하여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는 사용 허락계약은 저작자와 사용자가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입하여 개봉하는 때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다운로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실행 과정의 일부로 약관에 대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하는 방식(Click-Wrap License)으로 사용허락 계약이 체결된다.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원고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현재는 “A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파일)의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 시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서체 배포정책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과 나눔 정신의 실천입니다. A 폰트 배포정책과 달리 상업적 사용을 위한 복제 및 제3자에게 폰트파일 무단 배포, 게시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고, 원고는 다운로드할 사람이 위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기’를 체크해야만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동의하기’에 체크하고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원고와 다운로드한 사용자 사이에 그 서체 프로그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된 이용 및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도 이전까지는 원고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가정과 같은 비업무장소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내용이 있기는 하였지만 다운로드에 제한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한 당시의 네이버 자료실의 다운로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폰트’ 항목을 선택하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체들이 제시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서체를 클릭하면 별지 <그림 1>과 같이 화면 좌측에는 해당 서체의 디자인이 한글, 영어, 숫자 등으로 소개되고, 화면 우측에는 “무료다운로드”를 클릭할 수 있는 사각형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무료다운로드” 부분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서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 등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림 2>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다운받는 화면 하단에는 별지 <그림 2> 와 같이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안내문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별지 <그림 1>의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 범위를 제한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림 2>

그러나 “무료다운로드” 부분 바로 아래에는 “사용범위 프리 - 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개인’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무료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위 안내문구는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과 상당히 떨어진 화면 하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구가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포섭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1) 복제권 침해 인정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글문서에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을 입력한 결과물이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부분과 그대로 일치하고, 이 사건 홍보지의 위쪽 부분(제목, 프로그램 일정 등 부분)과 아래쪽 부분(표 등 부분)에 사용된 서체가 외관상으로도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지는 단순히 이 사건 서체의 도안이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 복지원은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을 담당할 성명불상의 직원이 퇴직하여 위 홍보지에 이 사건 서체가 사용된 경위를 알 수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등록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과실은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복지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복지원의 공정이용 항변 : 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은 특정한 도안의 서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문서작성 등에 해당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상업적·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F 프로그램’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홍보지는 피고 복지원이 주최하는 ‘G’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한부모가정 아동 및 양육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권리·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프로그램 입수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 외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판례의 검토

1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① 무료 폰트의 복제 및 사용 과정에서 복제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본 판결에서 무료 폰트의 경우 사용허락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저작권자와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아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 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즉 저작권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 폰트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면, 이용자가 설치 프로그램의 동의 버튼을 누르는 등 저작권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와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가사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도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② 사용 범위 제한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

무료 폰트의 사용허락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데, 본 판결을 통해 법원은 영리목적 사용 금지 등 무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명확한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본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특이한 점은 피고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포털 사가 제공

하였던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이 사건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복제(설치)했다는 점이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폰트 프로그램을 원고의 홈페이지 등 단일한 창구를 통하여 약관에 대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하는 방식(Click-Wrap License) 등으로만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였다면, 사용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약관으로 제시한 영리적 사용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사용허락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버튼 주변에 제시된 문구인 “1) 프리 - 개인, 국내”가 개인 자격이라면 국내에서는 목적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 2) 무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상당히 떨어져 눈에 잘 띄지 않는 화면의 맨 하단에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영리적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이 사건에서 필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준비서면을 통해 근거 법률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주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약관규제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제시되고, 소비자는 그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시하였어야 한다.¹⁾

본 판결에서 판단의 근거 법률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료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멀리 떨어진 화면 하단에 제시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이 사용허락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보면, 본 판결에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최광준, “소프트웨어계약과 라이선스약관의 유효성”,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대법학연구소, 2009, 151쪽.

본 판결은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허락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한 조건 등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PDF 변환금지 등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 등이 주로 문제되는데, 본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약관금지 조항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① 프로그램 저작물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의 대상인가 여부는 논쟁적이다.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²⁾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공정이용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10여년이 걸렸음은 이를 방증한다.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문서 작성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API의 경우와 다르게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으로 인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은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재판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판결과 달리 복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다.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아래와 같이 복제권 침해를 전제로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을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등록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과실은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2)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593 U.S. ___ (2021), 이하 “구글과 오라클 사건”

없는 한 피고 복지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에서는 본 판결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항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대법원³⁾이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이용) 행위와 설치 후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의 목적을 판단할 때 어떤 시점의 사실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판결에서는 아래 판시 사항에서 보듯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이 실제 폰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시점의 사용 목적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검토할 때 복제(설치) 시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판단의 범위를 실제 “사용” 시점까지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F 프로그램’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1024, 1031, 1048 판결

“이 사건 홍보지는 피고 복지관이 주최하는 ‘G’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한편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영리적인 업무 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폰트의 실제 “사용”단계에서는 이용 목적의 비영리성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 보듯 이용 주체가 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정이용이 바로 부인되지는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사용과 유용성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이른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라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판결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프로그램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 여부는 판결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설시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적·비상업적 이용이 어렵지 않게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본 판결에서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판단하는데 큰 쟁점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복제한 자바의 API 선언코드(declaring code)는 창의적인 레시피가 아니라 레시피가 들어있는 파일 캐비닛이라고 비유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한 바 있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하면서 구글이 복제한 코드가 전체 API 코드의 약 0.4%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 대비 비중을 판단하기 위해서 복제(설치) 시점이 아닌 실제 해당 폰트파일이 사용된 시점에 주목했다.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법원은 위와 같이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결과가 문서로 1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고 실시하면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 자모를 조합하여 사용한 글자 수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요컨대 본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3호상 “이용”된 부분의 비중을 판단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일시적 복제 포함)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시점에서 실제 한글 자모를 조합하여 사용한 글자의 양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 한부모가정 아동 및 양육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무료 폰트의 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폰트 프로그램 사용의 결과물인 게시물이 온라인 상 노출된 기간과 그 대상에 주목했다.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 횟수나 기간을 시장 영향성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실제 결과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게시 대상 등에서 이를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월, 연 구독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과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폰트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된 기간이 시장 영향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 오라클의 잠재적 수익손실을 인정하면서도 복제로 달성되는 공익성과 잠재적 손실을 비교한 것처럼 비교 형량의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 해볼만하다. 사건으로는 비영리 목적으로는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배포된 무료 폰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해당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다면, 사용 조건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또는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③ 본 판결의 한계 - 복제권 침해 판단

본 판결의 원심인 1심 법원에서는 복제권 침해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⁴⁾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료 폰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채무불이행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폰트 프로그램의 복제 및 사용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폰트 프로그램의 복제 및 사용 없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법원은 만연히 복제권 침해를 전제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료 폰트의 사용허락계약 체결 및 채무불이행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639117 판결

5. 결론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무료 폰트의 사용허락계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은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원고(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 범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PDF 변환 행위에 관하여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E-Book 변환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PDF 변환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PDF 변환 행위에 수반되는 복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PDF 변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계약 조항은 약관규제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⁵⁾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복제권 침해 판단 관련 일부 한계점을 노출하긴 하였으나 본 판결 선고로 인해 저작권자가 무료로 폰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폰트를 라이선스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 사용한 글자 수가 많지 않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 판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동안 이용자들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무료 폰트 복제 시 이용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를 새긴다면 반드시 저작권자가 제시한 약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료 폰트의 경우 약관의 내용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복제 당시 약관의 내용을 화면 캡처 해두는 것도 추후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5) <PDF 문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인 글자체가 사용된 산출물에 불과하고, 폰트내장형 PDF 문서에 폰트파일이 일부 복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 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PDF 문서에 폰트가 복제되거나 인터넷에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폰트파일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산출물의 이용 가능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6.



올해 선고된 일련의 판례로 인해 향후 무료 폰트의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역시 무료 폰트의 사용에 관한 법적 분쟁을 반복하기 보다는, 클라우드 방식의 유통 등과 같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시장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